의안번호	2213001
의 뢰 인	김선교의원
회 답 일	2025.11.24.
추계번호	25D5109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유족의 재혼 시에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,400만원, 2031년 3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7,8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혼인기간 5년 이상 유족의 재혼 시 연금수급권 유지 (안 제32조제1항)	34	35	36	36	37	178	36

주: 1.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족의 재혼 시 연금수급권 유지(안 제32조제1항 등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2. 본 추계는 최근 5년(2020~2024년)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건수 및 평균 연금월액 실적치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제1항 (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)	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 시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 ※현행법은 혼인기간에 관계없이 재혼 시에 연금수급권 상실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2조제1항 (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현행법에서는 퇴역유족연금을 수급 중인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관계없이 수급권이 상실되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함

❑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유족이 재혼 시에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
❑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이 지속되어 지급대상자가 되는 인원은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 1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○ 국방부에 따르면, 최근 5년(2020~2024년) 동안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사람은 1명

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[1)]

❑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1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3%	2.0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유족이 재혼 시에 연금수급권을 유지시켜 유족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

❑ 본 추계에서는 연도별 지급대상자 수, 1인당 평균 연금월액, 12개월을 곱하여 산출

○ **(지급대상자 수)** 2027년 1명, 2031년 1명

–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1명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하며,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 1명으로 가정하고 사망률 적용 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연도별로 지급대상자 수는 누적적으로 발생

[표 2] 지급대상자 수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	2027	2028	2029	2030	2031
2027	1	1	1	1	1
2028	–	–	–	–	–
2029	–	–	–	–	–
2030	–	–	–	–	–
2031	–	–	–	–	–
합계	1	1	1	1	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○ **(1인당 평균 연금월액)** 2027년 285만원, 2030년 309만원으로 추정

– 국방부에 따르면, 최근 5년(2020~2024년) 동안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사람의 연금월액은 2020년 기준 239만원으로 추정

– 퇴역유족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므로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활용하여 추정

[표 3] 1인당 평균 연금월액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1인당 평균 연금월액	285	291	297	302	3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추계결과,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유족의 재혼 시에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,400만원, 2031년 3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7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지급대상자 수 (a, 명)	1	1	1	1	1	-
1인당 평균 연금월액(b, 만원)	285	291	297	302	309	-
추가재정소요 (=a×b×12개월, 백만원)	34	35	36	36	37	17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건수 및 평균 연금월액 실적치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